

政府管理糧穀 放出價格의 現實化

許 信 行

首席研究員, Ph.D.(農業經濟學), 農政研究室

黃 延 秀

研究員, 農政研究室

- I. 背景과 目的
- II. 調整模型과 適正引上率 推定
- III. 穀價調節用 適正放出量 推定
- IV. 放出價格의 現實化와 物價變動
- V. 期待效果와 問題點 補完

I. 背景과 目的

政府管理糧穀의 放出價格을 現실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 이유는 糧特赤字의 단순한 累積 때문만이 아니라 왜곡된 米穀市場流通의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1971년부터 秋穀收買量 비중을 총생산량의 10% 이상 올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放出價格을 販賣原價보다 낮게 책정, 소위 二重米價政策을 오래도록 실시해 나온 과정에서 赤字發生은 물론이고 販購買行爲가 바뀌게 되었다. 정부가 穀의 放出價格을 연중 평준화시킴으로써 貯藏의誘因이 없어지게 되자, 농민은 洪水出荷期에 穀을 서둘러 판매하게 되고, 소비자는 穀購入을 평준화시켜 필요할 때에만 사들이는가 하면 중

간 상인도 가을에 穀을 구입하여 端境期에 매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 결과 收穫 직후의 穀集中出荷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超過供給量을 흡수해야 되는 정부의 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났다.

사람의 經濟行爲는 대부분 합리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收益성이 높은 곳에 돈을 배분한다. 그런데 收益성이 높다는 것은 機會費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간상인과 소비자가 가을에 穀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穀購入資金의 機會費用이 높으나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만일 중간 상인이나 소비자가 穀을 구입하여 저장하는 대신 그 돈을 銀行에 저축했다면 매달 利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穀을 買入 備蓄했을 때 政府米放出價格의 평준화로 인하여 銀行利子보다 낮은 收益이 발생한다면 아무도 穀의 貯藏내지 備蓄行爲를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농민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貯藏費는커녕 銀行利子도 보상되지 않는다면 몇 달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穀을 장기 보유할 농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

해서 정부가 放出價格을 평준화시킬수록 米價支持를 위해 매입해야 되는 超過供給量이 눈 둥치 듯 매년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糧特赤字가 계속 확대되어 정부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특히, 1982년에는 기존의 在庫가 많이 싸여 收買財源을 捏出해내기 어렵게 되자 米價支持를 위한 정부의 능력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결국 糧特赤字幅을 줄이면서 농민을 보호하는 길은 米穀市場流通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있다.

米穀市場流通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放出價格의 현실화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해 진다. 왜냐하면 여유 있는 농민으로 하여금 쌀을 장기 보유케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다음 해의 소비량까지 가을에 미리 구입케 유도하려면 충분한 價格誘因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民間流通機構도 장기보관 행위로부터 거기에 따른 비용과 적정한 이윤이 보장될 때 米穀市場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民間流通機構가 米穀市場에 합리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이들에 의해서 洪水出荷期의 超過供給量이 일부 흡수될 것이다. 나머지 超過供給量은 정부가 穀價調節을 위해 매입하게 될 物量에 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放出價格이 현실화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유통인들의 합리적인 販購買行爲가 米穀市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의 收買量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糧特赤字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농민의 米價는 적정 수준에서 支持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米穀放出價格의 현실화가 왜 1970년대에 논의되지 않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 糧政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는가? 1970년대는 韓國經濟에 있어서 획기적인 輸出伸張期라고 말할 수

있다. 1960년대의 어려웠던 여건을 극복하고 1970년대에는 海外進出에 자신을 얻어 국가의 모든 力量을 輸出擴大에 모았기 때문에 工產品의 生產原價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게 되었다. 당시 エンゲル係數가 높았던 勞動者들의 賃金引上要因을 가능한 억제시키기 위해서 食料品購入에서 비중이 가장 큰 쌀값을 낮추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값싼 勞動力에만 의존하여 輸出擴大를 도모하는 것은 時代錯誤的인 發想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都市勤勞者 家計費 가운데서 차지하는 米穀支出의 비중이 매년 떨어져 1981년에는 11.8%가 되어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쌀값이 커피 한 잔에 불과한 300원 미만에 불과하게 되었다.

米穀購入費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농민들에게는 아직도 所得構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 쌀로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1년 米穀所得이 農業所得에서 48.3%, 農家所得에서 32.5%를 차지하고 있어서 쌀값의 支持는 바로 農家所得의 증대와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수단을 동원하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쌀값을 지지해야만 하고, 현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放出價格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검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放出價格을 현실화한다는 전제 아래서 調整方法과 放出價格의 適正引上率 추정, 穀價調節用 適正放出量 추정, 放出價格의 현실화가 物價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실화에 따른 문제점 보완 등 매우 현실적인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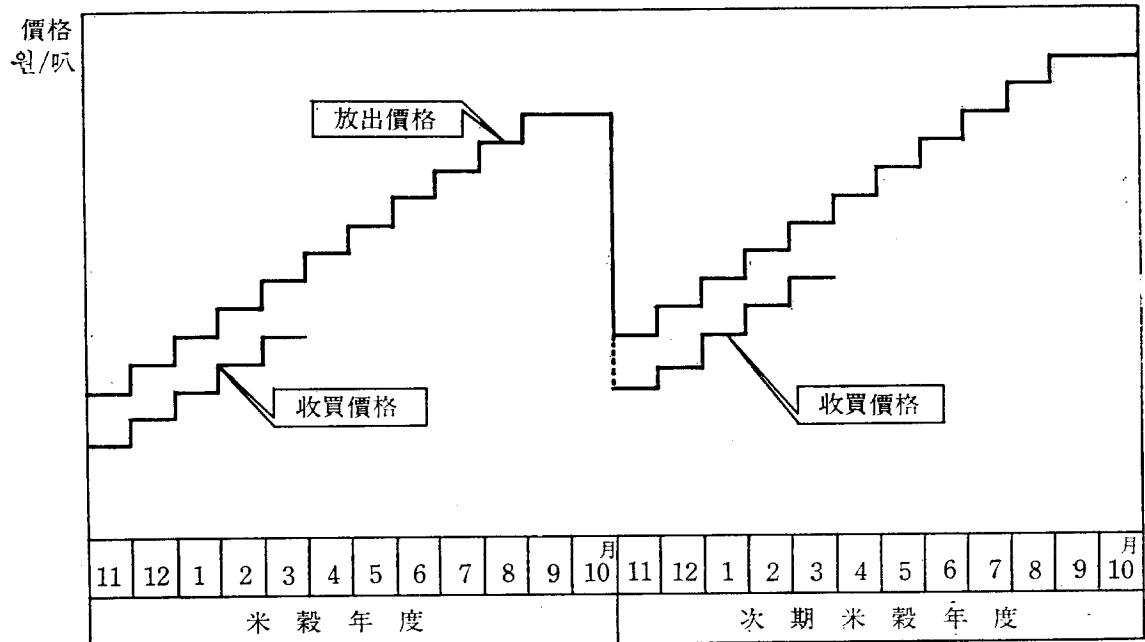
II. 調整模型과 適正引上率 推定

米穀流通機能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수확 이후 쌀을 보관하는 사람에게 實費 이상이 보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쌀을 장기간 보관내지 저장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實費란 쌀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저장했다가 판매할 때까지의費用 일체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放出價格은 販賣原價와 최소한 같거나 커야 한다. 販賣原價는 收買價에다 貯藏費와 각종 操作費 그리고 米穀收買에 지불된 資金의 利子 등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 이러한 販賣原價는 貯藏主體의 效用성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누가 貯藏主體이건 매월 일정액의 附帶費用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

는 사실이다. 그리고 누군가 이費用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생산자가 일정기간 쌀을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건, 또는 소비자가 장래에 소비할 쌀을 미리 구입하여 저장하건 쌀을 소유하는 주체가 이費用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쌀을 수매하여 비축해 두었다가 販賣原價보다 낮은 수준에 방출함으로써 赤字가 생겼다면 생산자나 소비자의 부담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의財政은 국민이 낸 稅金으로 지탱되고, 韓銀借入은 인플레이션으로 둔갑된다. 따라서 정부의運營赤字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부담인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는 쌀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는 대가로 稅金을 더 내던가 아니면 다른 財貨나 서비스를 약간 비싸게 구입하던가 둘 중의 하나 또는 이 둘의組合으로서 선택의 문제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아닌 국민이 糧特赤字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최선의 방법은受惠者

그림 1 米穀의 收買價格과 放出價格 調整模型



負擔原則으로 돌아가 쌀을 소비하는量에 비례하여 거기에 따른費用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受惠者負擔原則에 풀어放出價格을 현실화하는 길은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收買價格에다 매월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가산하여 販賣原價에 쌀을 방출하는 것이다. 流通費用의 발생에 따라 매일 階段式으로放出價格을 인상시키되 次期米穀年度에 가서流通費用 없는 新穀이 나오면放出價格을 떨어뜨려 다시 階段式으로 인상시켜 나가게 된다. 이런 형태의 價格決定方法을 가리켜 屈伸格制(sliding-scale pricing system)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價格制 아래서는 收買價格도 11월 이후 매월 발생되는 流通費用과 利子를 합한 금액만큼 가산하여 인상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정당한 비용이 보상될 뿐만 아니라一時大量出荷로 인한收買業務의 복잡과資金의 집중 방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매월의放出價格引上幅을 얼마나로 책정하는 것이 적정한가?

정부의收買, 貯藏, 加工,放出 등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실제비용을 매월 계산하여原價에 쌀을 판매하는 방식을 實費補償制라 할 수 있다. 販賣原價는 收買價와 流通費用(또는操作費)을 합한 것이며, 流通費用은 固定費用과 可變費用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固定費用과可變費用은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text{固定費用} = (\text{收買經費} + \text{加工費} + \text{荷役費})$$

$$+ \text{輸送費} + \text{包裝材料費} + \text{輸送減耗}$$

$$+ \text{收率減} - \text{副產物收入}$$

$$\text{可變費用} = \text{貯藏費} + \text{貯藏減耗} + \text{利子}$$

固定費用은 管理糧穀의 貯藏期間에 관계없이 발생하는費用의 합계이며, 可變費用은 管理糧

表 1 82/83米穀年度月別流通費用推定

단위: 원/80kg

月	固定費用 ¹⁾	可變費用 ²⁾	流通費用合計
82. 11	7,490	618	8,108
12	7,490	1,236	8,726
83. 1	7,490	1,854	9,344
2	7,490	2,472	9,962
3	7,490	3,090	10,580
4	7,490	3,708	11,198
5	7,490	4,326	11,816
6	7,490	4,944	12,434
7	7,490	5,562	13,052
8	7,490	6,180	13,670
9	7,490	6,798	14,288
10	7,490	7,416	14,906
平均	7,490	4,017	11,507

1) 固定費用은 1981米穀年度對比 10% 上昇할 것으로 單豫測된 假想值임, $(6,809 \times 1.1) = 7,490$ 원/80kg.
(단, 貯藏減耗는 輸送減耗와 分離가 곤란하여 固定費用에 포함됨).

2) 貯藏費: 甲地 1級倉庫基準 1日 保管料: 61.4 원/톤
甲地 1級倉庫基準 1日 保險料: 1.85 원/톤
月平均 80kg當 分藏費: 152 원/噸
利子=收買價×利子率

$$55,960 원 \times 0.1 \times \frac{1}{12} = 466 원$$

表 2 1982/83米穀年度月別放出價格推定

단위: 원/80kg

月	收買價格	流通費用	放出原價	引上率
82. 11	55,960	8,108	64,068	—%
12	55,960	8,726	64,686	0.96
83. 1	55,960	9,344	65,304	0.96
2	55,960	9,962	65,922	0.95
3	55,960	10,580	66,540	0.94
4	55,960	11,198	67,158	0.93
5	55,960	11,816	67,776	0.92
6	55,960	12,434	68,394	0.91
7	55,960	13,052	69,012	0.90
8	55,960	13,670	69,630	0.90
9	55,960	14,288	70,248	0.89
10	55,960	14,906	70,866	0.88
平均	55,960	11,507	67,467	

* 級等: 2等品精穀.

穀의 貯藏期間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의 累積이다. 이러한 계산식에 기초하여 1983년도 월별 固定費用과 可變費用을 추정해 본 결과가 <表 1>에 나타나 있다.

政府管理糧穀에 대해서 추정된 流通費用을 收

表 3 1982/83 米穀年度 月別 50% 流通費用 適用時
放出價格 推定

단위: 원/80kg

月	收買價格	流通費用 (50%)	放出價格	引上率 %
82. 11	55,960	4,054	60,014	—%
12	55,960	4,363	60,323	0.51
83. 1	55,960	4,672	60,632	0.51
2	55,960	4,981	60,941	0.51
3	55,960	5,290	61,250	0.50
4	55,960	5,599	61,559	0.50
5	55,960	5,908	61,868	0.50
6	55,960	6,217	62,177	0.50
7	55,960	6,526	62,486	0.50
8	55,960	6,835	62,795	0.49
9	55,960	7,144	63,104	0.49
10	55,960	7,453	63,413	0.49
平均	55,960	5,754	61,714	

* 等級 : 2等品精穀.

買價에 더하여 販賣原價를 예산한 계과가 <表2>에서 보는 것과 같다. 1982년 10월의 政府米放出價格 叱當 52,280원 對比 1982년 11월의 현실화된(假定) 放出原價 64,068원은 22.5%가 상승된 수준이다. 이같은 일시적 충격을 감내하기가 어려우면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시켜야 하겠지만 일단 調整이 끝났다고 가정하는 경우 1982. 11~1983. 10월 사이의 放出價格 引上率은 10.6%에 불과하다. 그러나 季節變動으로 인하여 次期 米穀年度 초에 10.6%가 하락, 收買價格 더하기 流通費用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연간 가격변동률은 결과적으로 收買價格의 引上率과 같아질 것이다.

다음에는 放出價格의 일시적인 현실화가 어려워서 流通費用의 50%만을 현실화시키고자 한다면 매월의 引上率과 糧特赤字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살펴보자. 收買價格에다 매월 발생하는 流通費用 累計의 50%를 가산하여 放出價格을 추정한 것이 <表3>에 있는 것과 같다. 1982년 11월의 2등품 80kg當 放出價格 60,014원은 1982년 10월 放出價格 52,280원에 비하면

14.8%가 引上된 수준이다. 그리고 1982년 11월부터 1983년 10월까지의 放出價格 引上率은 5.7%에 불과하다. 이같이 流通費用의 50%만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얻은 효과는 연간 5.7%에 달하는 小幅의 米價引上으로 消費者剩餘가 증가할 것이지만, 그 代價로 80kg當 평균 赤字가 5,753원이 발생하여 700萬石의 總糧特赤字額 725億원을 안게 된다.

만일 糧特赤字의 발생이 庶民의 社會保障을 위한 나머지 混合穀을 저렴하게 방출한 결과 나타난 것이라면 所得再分配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放出米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낮춘 결과 糧特赤字가 생긴 것이라면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까지 쌀값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격이 되어서 결코 바람직스런 정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 糧特赤字가 國家財政에서 충당되지 않고 韓銀의 發券力에 의해서 메구어진다면 결국 一般物價의 상승을 통해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放出價格의 바람직한 현실화는 <表2>에서 보는 것과 같이 販賣原價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放出價格의 현실화와 동시에 販賣價格을 22.5% 인상해야 되는 충격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물론 이같은 큰 충격을 매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放出價格을 현실화 할 때 이런 충격을 한번만 극복해 내면 다음해부터는 매월의 引上率 0.9% 내외만을 감수하면 米穀市場은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 충격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충격 그 자체를 몇 년으로 나누어 소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放出價格의 현실화와 동시에 감내해야 될 22.5%의 인상 충격과 매월의 인상을 포함시켜 놓고 볼 때 <表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평균

放出價格은 80kg 당 67,467원이 된다. 이價格은 소비자의 家計費支出면에서 받아들여 질 만한 것인가? 이에 대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소위 家計費米價라는 것이다. 이것은 都市消費者家口가 米穀購入에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家計費米價의 基準上限價格을 추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P_R = \frac{E_R + kE_0}{Q}$$

여기서,

P_R =家計費米價의 基準上限價格

E_R =월평균 家計費 中에서 쌀 購入에 지출된 費用

E_0 =월평균 家計費 中에서 쌀 購入 이외의 품목에 지출된 費用

$k=E_0$ 에서 E_R 로 보충할 수 있는 比率

Q =都市消費者家口의 월평균 쌀 消費量

統計資料 작성의 時差로 1982년의 어떤 자료도 조사 발표된 것이 없다. 그래서 1981년의 자료를 찾아보면 E_R 가 30,133원, E_0 가 224,357

¹ 都市勤勞者 家計費米價의 基準上限價格 추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81년 都市勤勞者 家口가 월평균 米穀購入費 30,133원으로 구입한 월평균 米穀購入量을 추정하면 0.526 叴가 된다. (1981년 평균 一般米 中品 서울 消費者價格 64,910원/80kg, 政府米 上品 放出價格 47,932원/80kg, 一般米 購入比重 71.7/130.1, 政府米 購入比重 58.4/130.1 을 기준으로 하여 1981년에 都市勤勞者家口가 평균적으로 쌀 1가마당 지불한價格은 $64,910원 \times \frac{71.7}{130.1} + 47,932원 \times \frac{58.4}{130.1} = 57,289원/80kg$ 이 되고, 이價格으로 30,133 원 어치를 구입했으므로 月平均 米穀購入量은 0.526식/80kg이 된다).

다음으로 도시근로자 가구가 米穀購入에支出 가능한 費用을 최근 5년간 도시근로자 家計費에서 米穀購入費가 차지하는 比重 14.2%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면 월평균 36,138원(月平均家計費 254,490원 $\times 0.142 = 36,138원$)이 되는데, 이 費用으로 0.526식/80kg의 쌀을 구입할 경우 즉 都市勤勞者 家計費米價 上限基準價格은 68,703원/80kg (36,138원 $\div 0.526 = 68,703원$)이 된다.

끝으로 월평균 米穀購入費를 1981년의 30,133원에서 36,138원으로 증가시키려면 米穀購入 이외의 家計費에서 일마를 米穀購入費로 보충해야 되는데 이 補充比率(k)을 계산하면 2.68%(30,133원 + k (254,490 - 30,133) = 36,138, $k = 0.0268$)이 된다. 이렇게 米穀購入費가 상승할 경우 도시근로자 가계비에서 米穀購入費가 차지하는 比重은 1981년의 11.8%에서 14.2%로 상승하게 된다.

원, Q 가 0.526식 그리고 k 는 0.0268로 나타나 있다. 이에 근거하여 家計費米價의 상한선을 구하면 2등품 80kg 당 68,703원이 된다.¹ 이것은 1981년의 家計費米價인데도 불구하고 1983년의 현실화된 연평균 放出價格보다 높으며, 1983년의 10월 가격 수준보다는 낮은 가격 수준이다. 이런 비교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放出價格의 현실화가 都市消費者家計費支出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III. 穀價調節用 適正放出量 推定

月別 適正放出量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米穀의 放出價格과 放出量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要因이 변하지 않고 있을 때 放出量(=需要量)은 放出價格의 函數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放出價格을 책정하지 않고 公開市場에 管理糧穀을 임의로 방출하여 價格自體를 조절코자 한다면 이때에는 價格이放出量(供給量)의 函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放出價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한 하나의 政策變數로서 獨立性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放出量은 이 政策價格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 정부에 의해서 공급된 것이지만 需要量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두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米穀需要에 대한 價格彈性值이다. 價格彈性值(ξ)는 다음과 같이 米價變動率($\frac{\Delta P}{P}$)분의 需要變動率($\frac{\Delta Q}{Q}$)로 나타난다.

$$\xi = \frac{\Delta Q/Q_0}{\Delta P/P_0}$$

여기서 需要(=放出量)의 增減 ΔQ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질 것이다.

表 4 放出價格을 現實化시할 때 期待되는 月別 適正放出量 指數 推定

月	放出價格指數 ¹⁾	放出量指數 ²⁾	現實化時放出價格指數		放出價現實化時放出量指數 ³⁾	
			50%	100%	50%	100%
82. 11	99.5	87.6	97.2	95.0	88.1	88.5
12	100.2	98.7	97.7	95.9	99.3	99.7
83. 1	98.7	82.6	98.2	96.8	82.7	83.0
2	99.8	87.6	98.7	97.7	87.8	88.0
3	98.2	82.6	99.2	98.6	82.4	82.5
4	96.7	84.6	99.7	99.5	84.0	84.4
5	97.7	103.2	100.2	100.5	102.6	102.5
6	98.5	112.3	100.8	101.4	111.7	111.5
7	104.4	122.4	101.3	102.3	123.2	123.0
8	102.7	120.7	101.8	103.2	120.9	120.6
9	102.7	122.5	102.3	104.1	122.6	122.1
10	101.1	95.2	102.8	105.0	94.8	94.4
平均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1975~82年間의 月別 放出價格을 12개월 移動平均法으로 산출한 季節變動指數임.

2) 1975~82年間의 月別 放出量을 年度別로 指數化하여 정규한 것임.

3) 米穀의 價格彈性值 ξ 는 -0.2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許信行, 「農產物價格政策」,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p. 68 參照).

$$\Delta Q = \xi \frac{\Delta P}{P_0} \cdot Q_0$$

그리고 價格變動에 반응한 ΔQ 와 基本需要 Q_0 를 합한 것은 다음과 같다.

$$Q_1 = Q_0 \left(1 + \xi \frac{\Delta P}{P_0}\right)$$

위의 模型에 의해서 추정된 月別 適正放出量 指數는 〈表 4〉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推定值는 어디까지나 1975~82년 사이에 시행되었던 政府管理米穀의 放出價格과 그에 따른 放出量에 근거하여 유도된 것이다. 이 말은 이 기간 동안에 정부가 米穀을 수매한 만큼 같은 規模를 앞으로도 계속 수매한다는 전제 위에서 타당성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米穀放出量은 放出價格의 函數일 뿐만 아니라 自由市場에서 형성되는 一般米 小賣價格의 函數

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一般米의 小賣價格은 政府의 收買量과 放出價格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適正放出量 推定值는 매우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穀價調節用이란 小題目을 붙이게 된 이유는 政府의 米穀放出量이 放出價格의 유지를 위해서 공급된 것이라 보아야지 때문이다. 1970년 이후 정부가 生產量 가운데서 최저 11.4%로부터 최고 23.4%에 이르기까지 米穀을 收買 備蓄해 왔었다. 策定된 放出價格의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방출하였다. 다시 말하여 책정된 放出價格의 유지는 自由市場의 一般米 價格으로부터 항상 도전을 받기 때문에 이의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放出量을 필요할 때 수시로 공급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가 放出價格을 현실화하였을 때 현실화된 政策價格을 유지시키려면 여기서 추정한 월별 放出規模가 공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穀價調節用 適正放出量이라는 말이 성립하게 된다.

IV. 放出價格의 現實化와 物價變動

放出價格의 現實화는 米價引上을 의미하고, 米價引上은 物價上昇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政府米 放出價格의 現實화는 두 경로를 통해서 物價에 영향을 준다. 하나는 放出價格 引上 그 자체요, 다른 하나는 自由市場의 一般米 價格上昇이다. 政府의 放出米價格이 오르면 放出米에 대한 需要가 일부 감소, 이것이 一般米로 옮겨가기 때문에 一般米價格이 상승하게 된다. 사후적으로 나타난 1969~81년 사이 政府米 放出價格과 一般米 消費者價格의 변동 관계를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ln P_F = -0.7678 + 1.0866 \ln P_G$$

(0.0456)

$$R^2 = .981$$

* () 안은 標準誤差.

여기서,

P_G : 政府米 放出價格, 원/80kg

P_F : 自由市場의 一般米 中品 서울 消費者價格, 원/
80kg

즉, 政府米 放出價格을 1% 引上시키면 一般米의 消費者價格은 1.0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서 放出價格을 일시에 현실화 할 경우 物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1981/82 米穀年度의 政府米 평균 放出價格이 2등품 80kg 당 52,806원이었는데 이를

현실화할 경우 1982년 11월의 放出價格은 64,068 원으로서 21.3%가 오르게 된다. 放出價格을 일시에 21.3% 인상하면 自由市場의 一般米 消費者 價格은 23.1%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980년 기준 全國消費者物價指數에서 차지하는 政府米의 비중이 44.9% (米穀全體를 100으로 할 때)이고, 一般米의 비중은 나머지 55.1% 이므로 이 둘을 加重平均한 米價上昇率은 22.3%가 된다. 全國消費者物價指數에서 穀이 차지한 加重值가 130.1이므로 消費者物價에 대한 米價上昇率 22.3%의 寄與度는 2.9%에 해당된다. 이것은 放出價格의 現실화 조치와 동시에 나타나는 일대 충격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후 1982년 12월부터 <表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달

表 5 政府米 放出價格의 部分別 現實化가 物價에 미치는 影響推定

流通費用 現實化率 (A) ^b (%)	平均放 出價格 (B) ^b (원/80 kg)	'83米穀年度 穀		消費者米價上昇率						全體消費者物價上昇率			
		貯當 (C) ^b (원/80 kg)	總額 (D) ^b (10억 원)	收買價引 上寄與 (E) ^b (원)	放出價現 實化寄與 (F) ^b (원)	政府米		一般米		各計 (I) ^b	收買價引 上寄與 (J) ^b (원)	放出價現 實化寄與 (K) ^b (원)	各計
						收買價引 上寄與 (G) ^b (원)	放出價現 實化寄與 (H) ^b (원)	小計	小計				
0	55,960	11,507	145.0	6.0	0	6.0	6.5	0	6.5	6.3	0.82	0	0.82
10	57,111	10,356	130.5	6.0	2.1	8.1	6.5	2.3	8.8	8.5	0.82	0.29	1.11
20	58,262	9,206	116.0	6.0	4.1	10.1	6.5	4.5	11.0	10.6	0.82	0.56	1.38
30	59,412	8,055	101.5	6.0	6.2	12.2	6.5	6.7	13.2	12.8	0.82	0.85	1.67
40	60,563	6,904	87.0	6.0	8.2	14.2	6.5	8.9	15.4	14.9	0.82	1.12	1.94
50	61,714	5,754	72.5	6.0	10.3	16.3	6.5	11.1	17.6	17.0	0.82	1.40	2.22
60	62,865	4,603	58.0	6.0	12.3	18.3	6.5	13.4	19.9	19.2	0.82	1.68	2.50
70	64,015	3,452	43.5	6.0	14.4	20.4	6.5	15.6	22.1	21.3	0.82	1.96	2.78
80	65,166	2,301	29.0	6.0	16.5	22.5	6.5	17.8	24.3	23.5	0.82	2.24	3.06
90	66,317	1,151	14.5	6.0	18.5	24.5	6.5	20.1	26.6	25.7	0.82	2.52	3.34
100	67,467	0	0	6.0	20.6	26.6	6.5	22.4	28.9	27.9	0.82	2.81	3.63

1) 放出價格現實化가 없을 경우에도 收買價引上만큼은 放出價格이 上昇할 것으로 보고 流通費用部分에 대해서만 現實化率을 적용했으며, 現實化率 100%일 때 販賣原價 (=收買價+流通費用)대로 방출되어 當年糧特赤字가 完全解消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平均放出價格 = 收買價 (55,960원) + 流通費用 (11,507원) × 現實化率.

3) 當年糧特赤字 = 67,467원 - 現實化率에 따른 放出價格 (B).

4) 粮特赤字總額 = 當年糧特赤字 × 1983米穀年度 收買量 (700萬石 = 1,260萬kg/80kg).

5) 政府米의 收買價引上에 따른 放出價格 上昇率은 1982米穀年度 平均 放出價格 對比 收買價格 (52,806) 上昇率을 말함.

6) $F = \frac{\text{現實化率에 따른 放出價格}(B)}{\text{收買價}(55,960원)}$

7) $G = E \times \text{政府米價格 上昇에 대한 一般米價格彈性值}(1.0866)$.

8) $H = F \times 1.0866$.

9) $I = \left\{ \text{政府米價格上昇率} \times \text{政府米比重} \left(\frac{58.4}{130.1} \right) \right\} + \left\{ \text{一般米價格上昇率} \times \text{一般米比重} \left(\frac{71.7}{130.1} \right) \right\}$

10) $J = (E \times 0.449 + G \times 0.551) \times \text{전체소비자 물가지수에서 米穀이 차지하는 比重} \left(\frac{130.1}{1,000} \right)$

11) $K = (F \times 0.449 + H \times 0.551) \times \frac{130.1}{1,000}$

0.9%안팎으로 계속 放出價格을 引上시켜야 하는데 1982/83米穀年度의 평균 放出價格은 80kg 당 67,467원이다. 이것은 1982년 11월의 현실화된 平均放出價格 64,068원에 비하면 5.3%가 인상된 수준이다. 이 5.3%引上은 다시 自由市場의 一般米 消費者價格을 5.76%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이들 米價上昇率을 市場占有率에 근거하여 加重平均하면 5.55%의 상승이 된다. 따라서 5.55%의 米價上昇이 消費者物價에 기여한 것은 0.72%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放出價格 現실화에 따른 一時上昇과 年中上昇을 모두 합한 것이 消費者物價에 영향을 준 최종 寄與度는 3.63%나 된다.

이번에는 政府管理米穀의 流通費用을 50%만 현실화 하였을 때 이것이 物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流通費用 50% 현실화와 동시에 1982년 11월의 放出價格은 80kg 당 60,014 원이 되어 1981/82米穀年度의 평균 放出價格 52,806원보다 13.6%가 높아진다. 이에 따른 自由市場의 一般米價格은 14.78% 상승하게 될 것이다. 市場占有率에 근거, 加重平均한 米價上昇率은 14.24%가 되며, 이의 消費者物價에 대한 寄與度는 1.84%가 된다. 한편 1982/83米穀年度 평균 放出價格 引上率은 2.83%이며, 이에 따른 自由市場의 一般米價格 상승률은 3.07%가 된다. 이 둘의 加重平均 米價上昇率은 2.96%이고, 消費者物價에 대한 이의 寄與度는 0.38%가 된다. 따라서 政府米 流通費用 50%만을 현실화하였을 때 이 조치에 따른 최종적인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2.22%가 된다.

위와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政府米 流通費用을 10등분하여 현실화할 경우 消費者 物價에 미치는 寄與度가 <表 5>에 나타나 있다. 政策立案者가 이 추정 결과를 보고 3년에 걸쳐 매년

30%씩 현실화 해 나아가거나 5년에 걸쳐 매년 20%씩 현실화하는 등 어떤構想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혼동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은 放出價格의 現실화와 동시에 일어나는 米價의 一時暴騰과 연간 引上率과는 다르다는 사실이며, 一時暴騰 현상은 한번밖에 없고 이것 이 지난 다음 해부터서는 매년 평균 5.55%의 米價上昇率이 있을 뿐이다. 이것마저도 次期年度의 收穫期를 맞아 放出價格이 理論的으로는 5.55% 가까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실제 米價上昇率은 收買價格의 引上率에서 약간 벗어나게 될 것이다.

V. 期待效果와 問題點 補完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다른 무엇보다도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온 粮特赤字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累積되어 온 粮特赤字의 대부분을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했다고 본다면 放出價格의 現실화와 동시에 더 이상의 粮特赤字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通貨增發에 의한 物價上昇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두번째의 期待效果는 政府管理米穀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농민의 米價支持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政府米 放出價格이 現실화 됨에 따라 自由市場의 米價가 放出價格보다 더 높게 상승하여 米穀의 貯藏에 따른 일정 수익이 보장됨으로써 中農과 大農이 일부의 米穀을 長期保管하게 되고, 소비자가 서둘러 洪水出荷期에 장래의 소비량까지 구입할 것이며, 民間流通機構가 米穀市場에 개입하여 超過供給量의 일부를 흡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穀價調

節에 필요한 최소한의 量만을 收買備蓄하더라도 농민의 米價支持는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期待되는 효과는 米穀端境期에 보리 쌀을 중심으로 한 다른 곡물의 代替消費를 촉진 시켜 主穀自給達成을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輸入에 따른 外貨를 줄이게 될 것이다. 筆者の 需要分析에 따르면 쌀의 實質小賣價格이 1% 상승 할 경우 쌀의 소비량을 0.23% 줄이는 대신 그 전까지 며칠 보리의 소비량을 1.56% 그리고 밀의 소비량을 1.58%씩 각각 늘리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서 추가로 代替되는 보리와 밀 등의 소비량은 국내 생산에서 충당된다는 전제 아래 期待效果가 커지는 것이다.

위와 같은 期待效果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문제는 政府米放出價格의 현실화와 동시에 나타나는 一時暴騰을 소비자, 특히 低所得層이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82년 11월에 放出價格을 완전하게 현실화 한다고 가정하면 2등 품 80kg에 64,068원으로 뛰어 올라 都賣勤勞者家計費 가운데서 차지하는 쌀의 支出費가 13.8%에 해당되어 현실화 이전의 비중 11.8%에 비하여 2%가 높아진 셈이다. 부담의 폭이 低所得層에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 문제를 보완하는 길은 庶民을 위한 混合穀을 만들어 이를 저렴하게 방출하되 여기서 발생하는 赤字는 社會保障政策의 차원에서 一般財政으로부터 충당 시키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일종의 所得再分配政策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民間流通人들의 買占賣惜 행위에 의한 暴利發生 가능성에 있다. 放出價格이 현실화 된 결과 貯藏行爲로부터 일정한 利潤마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 많은 民間流通人們이 米穀市場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마치 不動產投機 過熱現象같은 것이 米穀市場에서 일어난다면 소비자 米價의 暴騰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면 먼저 民間流通人們을 잘 善導하고, 정부가 穀價調節에 충분한 物量을 언제나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文八龍, “糧穀政策의 轉換方向,” 「農業政策研究」第9卷第1號, 韓國農業政策學會, 1982.
- _____, 「穀價政策의 計劃化」, 研究叢書 2, 韓國開發研究院, 1973.
- 柳炳瑞, “食糧需給安定을 위한 食糧安保備蓄制度”, 「韓國開發研究」第3卷第4號, 韓國開發研究院, 1981. 12.
- 李 烂, “商品類型別 價格政策의 方向”, 「韓國開發研究」第2卷第2號 韓國開發研究院, 1980. 6.
- 李政雄, “消費者物價變動要因分析”, 「韓國銀行調查月報」, 第33卷第12號, 韓國銀行, 1979. 12.
- 朱龍宰外, 「米穀流通에 關한 研究」, 研究報告 21,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
- 許信行, 「農產物價格政策」 研究叢書 10,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 川村秀三郎, “米・麥の政府賣渡價格決定”, 「農林水產省廣報」第11卷2第號, 日本農林水產省, 1980. 2.
- 町田勝弘, “米價と食糧管理制度の分析”, 「農業と經濟」第47卷第4號, 富民會・毎日新聞社, 1981. 4
- 吉田寛一, “米價政策の基本的 あり方”, 「農業と經濟」第45卷第4號, 富民協會・毎日新聞社, 1979. 4.